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1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2억 4천 6백만원 대비 74.7%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 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895,733	1,245,733	2,176,447	1,280,714	930,714	143.0%	74.7%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70	70	70	0	0	0%	0%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700	2,700	2,700	0	0	0%	0%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892,963	892,963	892,963	0	0	0%	0%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0	350,000	350,000	350,000	0	100%	0%
보전 수입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762,607	762,607	762,607	100%	100%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0	0	168,107	168,107	168,107	100%	1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세목	구분	예산액				비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0	0	930,714	930,714	930,71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자치경찰총괄과)		0	0	218,460	218,460	218,46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자치경찰협력과)		0	0	14,995	14,995	14,995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자치경찰지원과)		0	0	529,152	529,152	529,152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자치경찰지원과)		0	0	168,107	168,107	168,107	

2.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41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27억 3천 8백만원 대비 6.1%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2,388,272	22,738,272	24,118,921	1,730,649	1,380,649	7.7%	6.1%	
행정 관 리	소 계	22,388,272	22,388,272	23,768,921	1,380,649	1,380,649	6.2%	6.2%
	행정운영경비	286,578	286,578	245,138	Δ41,440	Δ41,440	Δ14.5%	Δ14.5%
	재무활동	0	0	1,039,723	1,039,723	1,039,723	100%	100%
	사 업 비	22,101,694	22,101,694	22,484,060	382,366	382,366	1.7%	1.7%
교 부 금	0	350,000	350,000	350,000	0	10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54,581	454,581	1,835,230	1,380,649	1,380,649	303.7%	303.7%
국고보조금 반환 (자치경찰총괄· 협력·지원과)	0	0	1,039,723	1,039,723	1,039,723	100%	100%
기본경비 (자치경찰총괄과)	201,171	201,171	159,731	Δ41,440	Δ41,440	Δ14.5%	Δ14.5%
관광경찰대 운영	253,410	253,410	635,776	382,366	382,366	150.9%	150.9%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7억6천3백만원)’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1억6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 기정 예산(12억 4천 5백만원) 대비 74.7% 수준인 9억 3천만원을 증액 조정 하려는 것임.

※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2023. 1.27.교부)은 간주처리 하였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 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895,733	1,245,733	2,176,447	1,280,714	930,714	143.0%	74.7%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70	70	70	0	0	0%	0%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700	2,700	2,700	0	0	0%	0%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892,963	892,963	892,963	0	0	0%	0%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0	350,000	350,000	350,000	0	100%	0%
보전 수입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762,607	762,607	762,607	100%	100%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0	0	168,107	168,107	168,107	100%	100%

※ 간주처리 : 총 2건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내역은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전 시책”사업으로 2억5천만원과 1억원 등 총 3억5천만원(제2차 간주처리(2023.1.27.)).

〈 2023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총 계	0	930,714	930,714	
세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762,607	762,607	○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 협력 지원과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처리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0	168,107	168,107	○ 편성부서 : 자치경찰지원과 ○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세입처리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710 보전수입등 - 712 전년도 이월금 - 712-01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국고로 반납할 금액(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710 보전수입등 - 715 보조금 등 반환금 -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서울시 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중 34개의 국고보조사업과 행정안전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등 7억 6천 2백만원을 순증하여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서울시 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중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협력단체지원(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6천 8백만원을 순증하여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총괄 현황(세입) 〉

('23. 5. 기준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A=B+C+D)	집행액 (B)	차기 이월액(C)	당기집행 잔액(D)	이자액 (E)	산출액 (D+E)	집행률 (A/B, %)
합계	16,083,872	14,742,395	433,878	907,599	23,117	930,714	91.7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200,851	8,004,364	433,878	762,607	해당없음 (재무과 에서 기타 이자수입 처리)	762,607	87.0
행정안전부 보조사업 (총 3개 각 부서 1개)	892,963	601,430	20,000	271,533		271,533	67.4
경찰청 국고보조사업 (자치경찰지원과 3개)**	8,307,888	7,402,934	413,878	491,076		491,076	89.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자치경찰지원과, 3개사업, 3개단체)**	6,883,021	6,738,031	0	144,990	23,117	168,107	97.9

* 36개 사업 중 단독 민간경상보조 2개 제외(대한노인회의 민간경상보조, 부대경비)

** 사업 1.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노인회), 2.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노인회),
3. 협력단체지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의 민간경상보조+사무관리비)

※ 이자발생 산출 기준일: 2023. 7. 31.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3. 6. 7.) 재인용.

〈 2022년 서울 자치경찰사무 사업내역 〉

세부사업명	건수	세부사업명	건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자치)	10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자치)	13
아동안전지킴이(자치)	3	교통안전교육홍보(자치)	2
교통안전활동(자치)	3	교통과학장비관리(자치)	5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요한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행정안전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7억 6천 2백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
- 다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겠으나, 서울시 자치경찰사무가 종전에 없던 사무를 신규 편성한 사업이 아니라 종전의 국가경찰 사무였으나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로 변경된 것으로 종전의 사업예산 집행실적 및 집행잔액의 적정금액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제2차 재정분권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예산도 2022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을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2. 세출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41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27억 3천 8백만원 대비 6.1%(13억8천1백만원) 증액하려는 것으로,
 -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4천1백만원)” 감액 1건, “국고보조금 반환(10억3천9백만원)”, “관광경찰대 운영(3억8천2백만원)” 사업 증액 2건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2,388,272	22,738,272	24,118,921	1,730,649	1,380,649	7.7%	6.1%	
행정 관 리	소 계	22,388,272	22,388,272	23,768,921	1,380,649	1,380,649	6.2%	6.2%
	행정운영경비	286,578	286,578	245,138	Δ41,440	Δ41,440	Δ14.5%	Δ14.5%
	재무활동	0	0	1,039,723	1,039,723	1,039,723	100%	100%
	사 업 비	22,101,694	22,101,694	22,484,060	382,366	382,366	1.7%	1.7%
교 부 금	0	350,000	350,000	350,000	0	100%	0.0%	

-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편성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와 개별 대상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가.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감액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이 중에서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4천 1백만원(14.5%)을 감액(7천8백만원 → 3천7백만원)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바,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의 감액조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다만, 이는 당초 과다하게 편성된 ‘국내여비’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예산 수립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자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미편성할 경우 ‘정산 후 최초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해야 함에 따라 금번 추가 경정예산에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서울경찰청 보조사업 36개) 보조금 7억 6천만원과 행정안전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보조금 2억 8천만원 등 10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세출	국고보조금 반환	0	1,039,723	1,039,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협력지원과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신규 편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반환금 (0원→1,040백만원) </div>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찰사무 중 관할지역의 생활 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함. 서울은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2022년 자치경찰 사무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서울시가 받아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배정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로 재배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 예산 재배정

-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시·도 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에 한함),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지방회계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제4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③ 본청 실·국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처(국·과장), 제1관서 또는 다른 제1관서, 시도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의 경우),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 포함)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202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총괄 현황(세출) 〉

('23. 5. 기준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A=B+C+D)	집행액 (B)	차기 이월액(C)	당기집행 잔액(D)	이자액 (E)	반납총액 (F=D+E)	집행률 (A/B, %)
합 계 (통계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83,872	14,742,395	433,878	907,599	132,122	1,039,720	91.7
행정안전부 보조사업 (총 3개, 각 부서 1개)	892,963	601,430	20,000	271,533	7,934	279,466	67.4
자치경찰총괄과	742,000	523,539	-	218,461	6,192	224,653	70.6
자치경찰협력과	90,000	55,005	20,000	14,995	787	15,782	61.1
자치경찰지원과	60,963	22,887	-	38,077	954	39,031	37.5
경찰청 보조사업 (총 36개, 자치경찰지원과)	15,190,909	14,140,965	413,878	636,066	124,188	760,254	93.1

※ 이자발생 산출 기준일: 2023. 7. 31.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3. 6. 7.) 재인용.

〈 2022년 서울 자치경찰사무 사업내역 〉

세부사업명	건수	세부사업명	건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자치)	10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자치)	13
아동안전지킴이(자치)	3	교통안전교육홍보(자치)	2
교통안전활동(자치)	3	교통과학장비관리(자치)	5

- 이 중 행정안전부 보조사업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으로 1차 국고보조금 6억 2천 5백만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제10차 간주처리(2022.6.28.))되었고, 2차 국고보조금 2억 6천 8백만원은 9월 14일 늦은 교부에 따라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2차 교부금 2억6천 8백만원, 반납금 2억7천9백만원) 반납하게 되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차 국고보조금 6억 2천 5백만원도 2022년 6월에 교부되어 간주처리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7월)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 교부가 늦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재정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조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 “관광경찰대 운영”은 관광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한 치안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중대재해 위험성 있는 노후건물 개선을 위한 개방형센터(명동, 이태원) 정비를 위하여 기정예산 2억 5천 3백만원 대비 150.9% (3억8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따르면 관광경찰대 설치·운영도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임.

관광경찰대 운영현황

◎ 조직 및 인력 : 1대장(경정), 4팀(경감) / 정원 60, 현원 59

- 근무지(6개서) : 종로2가·명동·이태원·압구정파출소, 을지·홍익·역삼지구대
- 거점(7개소) : 마포(본부), 남대문, 홍대, 이태원, 인사동, 동대문, 강남
- 센터(4개소) : 명동, 이태원, 홍대, 동대문

◎ 업무성과(20~23년) : 단속건수 3,989건 / 불편처리 92,221건

구분	단속					불편처리
	계	미신고속박업	택시콜밴	상표법	기타	
'22년	2,295	538	1	-	1,756	54,460
'21년	1,318	602	1	-	715	14,253
'20년	376	208	22	-	146	23,508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35,776	253,410	382,366
사무관리비	148,000	148,000	0
공공운영비	99,000	99,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388,776	6,410	382,366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센터부스 제작 2개소 184,305,000원 * 2개소(명동,이태원) = 368,610천원
	○내부집기 구매 6,878,000원 * 2개소(명동,이태원) = 13,756천원
	증감사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치안 수요외 다양한 업무처리를 위한 센터기능 확대로 시설 확장과 건물 노후로 인한 강우시 화재위험과 천장붕괴 위험성 상존 및 외부충격시 건물반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선제적 예방을 위해 철골구조 건물로 시설 개선 필요

○ (사업명) 관광경찰대 개방형센터 시설개선

※ 추진부서 : 자치경찰차장 생활안전부 생활안전과 관광경찰대(마포본대)

○ (사업기간) 23. 7월 ~ 10월까지, [4개월간]

○ (대상시설) 관광특구내 개방형센터 2개소(명동, 이태원)

○ (개선방법) 법령검토(점용공간 확보 등) → 추경예산 편성 → 신규 제작

※ 시설개선 예정, 개방형센터 2개소는 도로 점용허가 중으로 관할 구청과 협의 완료(23.4월)

- 재산소유 : 명동센터(중구청), 이태원센터(기획재정부 산하 토지로, 용산구 관리위탁토지)

○ (소요예산) 총 사업비 382,366천원

시안	항목별	견적가격	외관특징
	센터부스 2개소	1개소 기준 191,183천원 (센터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조명, 전광판, 글라스 유리 등 세련된 이미지 및 외부충격에 강한 철골구조 ○ (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데스크와 소규모 탕비공간 설치 및 방문객 4인 이상接客공간 확보
	내부시설 2개소	184,305천원 (내부시설) 6,878천원	

※ 센터 크기 : 가로 3m × 세로 6m (면적 18㎡, 5.5평)

※ 자치경찰위원회, 관광경찰대 시설개선 계획(안), 2023.5.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광경찰대 운영” 사업의 증액 편성 사유로 관광객 급증에 따른 치안 수요외 다양한 업무처리를 위한 센터 기능 확대로 시설 확장과 건물 노후로 인해 강우시 화재위험과 천장붕괴 위험성 상존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관광경찰대 센터 운영현황 〉

구 분	명동센터('14.6월)	이태원센터('15.2월)	홍대센터('20.5월)	동대문센터('15.3월)
위 치	 (명동지하쇼핑센터 앞)	 (이태원동 34-2)	 (서교동 348-1)	 (을지로6가 18-12)
면적	▶ 3.3평(4명 수용 가능)		▶ 6.3평(8명 가능)	

○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바뀌고, 격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4월 90만명으로 2019년 4월의 55%의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고,¹⁾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고 있음.

※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시대, 관광매력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2022.12.12.)하고, 관광업계 조기회복과 관광대국으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23~'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였음.

- 관광객 급증에 따라 관광경찰대 센터의 업무도 급증이 예상되나, 협소한 내부공간으로 운영인력 최소 배치(2명)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을 포함한 수용 인원이 4명으로 방문객 외부대기 발생 등 관광객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및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 관광지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불편사항 처리, 관광안내 등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개방형센터 업무 대부분은 분실습득 신고 등 불편처리가 업무의 대부분(97%) 차지하고 있음.

※ 명동(9년), 이태원(8년) 센터는 외부 노출된 얇은 단일철골 건물로 계절적인 기온차, 비바람 등으로 3년 경과시부터 부식이 심화되었으며, 강수시 누전에 따른 화재위험과 천장 붕괴 위험 있음. 또한, 명동센터는 야간에 차량 직격으로 센터가 반파('20.3.29.)된 적도 있다고 함(야간 발생으로 근무자 피해는 없었음).

1) 이데일리, “외국인 관광객 90만명 ...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 회복”, 2023년 6월 5일자 참조.



차량반파사고(20.3월)

천장 노후로 인한 누수(내부 시설 부식 및 전기 관련 사고 위험 증가)

〈 관광경찰대 명동·이태원센터 이용자 현황 〉

○ 이용자(불편처리) 현황('23년 1월 ~ 5월까지)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4,690	803	696	1,071	1,027	1,093
명 동	3,194	520	434	750	739	751
이태원	1,496	283	262	321	288	342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3. 6. 7.) 재인용.

○ 단속건수(신고처리 기준)('23년 1월 ~ 5월까지)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247	32	28	61	78	48
명 동	186	30	22	44	51	39
이태원	61	2	6	17	27	9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3. 6. 7.) 재인용.

〈 명동과 이태원센터 위치 및 현장사진 〉

구 분	명동센터	이태원센터
위치		

센터사진



- 다만, 현재 명동과 이태원 관광경찰센터는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 사용하고 있었고, 센터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 (중구, 용산구)에 도로점용허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명동센터는 중구에서 도로점용허가 변경 승인요청을 받았으나 이태원센터는 현재까지 용산구에서 변경허가가 가능할 것 같다는 사전검토 결과만 받았는바, 사업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 변경 승인요청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 제107조 참조).

○ 명동센터 도로점용허가 변경 승인요청 회신(시행 중구 건설관리과-13216)

신청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변경전)	점용면적 (변경후)	점용대상	비고
서울특별시경 찰청 생활안전 과	남대문로2가 16-17 도로 (명동)	12㎡	18㎡	관광경찰 안내센터	기신청 도로점용허가 기간 2023.01.01.~ 2025.12.31.

○ 이태원센터 도로점용 협의자료(시행 용산구 건설관리과-9525)

2. 용산구 이태원동 34-2(도) 이태원 관광경찰 안내센터의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에 대해 사전검토 결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 센터의 기능(관광지 범죄예방·관광 관련 불법행위 단속·관광안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용시설물에 한해 변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사항: 점용면적 변경(12㎡ → 18㎡) 끝.]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관광경찰센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관광객들의 이용을 쉽게 하고자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에 설치·운영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로의 센터 설치하는 가건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바, 몇 년 단위로 계속 교체와 정비가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고려할 때 센터 운영을 근처 건물 임대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동관광정보센터는 명동하나금융그룹 건물 1층에 위치(중구 을지로 2가 181)하고 있고, 용산역 관광정보센터는 용산역(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3층에서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장비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4월말 기준 전액 또는 85% 이상 미집행된 사업들(총 52개 세부 사업 중에서 30개 사업)은 집행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 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를 실시하라고 하였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재정집행에 대한 집중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 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사업 등 14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으로 연말에 몰아치기식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3년 4월말 현재 85%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23.4.30.기준) 〉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치경찰 총괄과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71,100	4,169	66,931	94.1%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314,220	0	314,220	100%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250,000	0	250,000	100%
	협업치안인프라 강화	156,928	2,360	154,568	98.5%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482,000	0	482,000	100%
자치경찰 협력과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100,000	0	100,000	100%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8,400	11,631	86,769	88.2%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전환사업)	78,915	2,158	76,757	97.3%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138,398	4,880	133,518	96.5%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85,440	2,233	83,207	97.4%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514,490	36,274	478,215	92.9%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31,620	2,622	28,997	91.7%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8,620	3,095	55,525	94.7%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	6,230	0	6,230	100%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4,340	0	4,340	100%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801,221	806,243	5,994,978	88.1%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525,974	49,186	476,788	90.6%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1,768,000	0	1,768,000	100%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19,500	0	19,500	100%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105,400	1,581	103,819	98.5%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안정 시책	250,000	0	250,000	100%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치경찰 지원과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 환경 개선	2,006,500	2,150	2,004,350	99.9%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72,700	5,150	67,550	92.9%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47,500	0	47,500	10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 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231,540	9,789	221,751	95.8%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253,410	20,777	232,633	91.8%
	기타 교통활동 지원	45,500	0	45,500	100%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320,878	0	320,878	100%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1,300,000	0	1,300,000	100%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100,000	0	100,000	100%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